

균형 잡힌 삶으로 만드는 가정의 행복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워라벨(Work Life Balance)은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단어로 1970년대 후반 영국에서 처음 등장했다고 한다. 이처럼 행복한 삶과 이를 지탱하는 일의 균형은 우리 인류가 오래도록 고민한 문제이기도 하다. 특히나 인구 소멸 위기에 닥친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그 가정을 위한 지원제도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일하는 노동자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어 줄 고용노동부의 일가정양립 지원제도를 알아본다.

일하는 노동자의 가정에 여유를!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

아이에 대한 걱정으로 맘 편히 일하기 힘든 부모들이 많다. 하지만 아이를 키우기 위해 일을 포기할 수도 없다. 게다가 육아기(만 12세 이하) 자녀와 보내는 시간은 아이의 올바른 성장과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주는 매우 중요한 순간이다. 자녀의 양육을 위해 노동시간을 주 15~35시간으로 30일 이상 단축한 경우, 줄어든 임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한다. 주당 10시간 단축분까지는 월 최대 250만 원, 나머지 단축분은 월 최대 160만 원이 제공된다.

난임치료 지원 제공

새로운 생명을 계획 중인 노동자를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특히 난임치료 시술 등을 계획 중이라면 연간 6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그중 2일은 급여(1일 84,210원)까지 받을 수 있다. 휴가 지원 범위는 난임시술 전 필수 준비를 위한 병원 방문 기간과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을 위한 기간, 마지막으로 시술 직후의 안정기 및 휴식기다.

출산 관련 휴가 확대

출산 전후에 휴가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이 제공되며 유산 또는 사산 시에도 10~9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휴가 중 급여는 월 최대 220만 원까지 지급된다. 새 생명을 맞이하는 아빠들도 총 20일의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급여 상한액은 최대 약 168만 원까지 지급된다.

기업 운영은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육아기 10시 출근제 시작

육아기 자녀를 둔 직원이라면 임금 삭감 없이 1시간 단축 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 사업주가 직원의 단축근무를 허가한다면 해당 직원은 최대 1년간 월 최대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1시간이지만, 직원은 가족의 행복을 챙기고, 회사는 직원을 지키는 소중한 시간을 선사한다.

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제공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으로 직장 내 업무 공백이 발생해 30일 이상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이 제공된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140만 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1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육아휴직 전 2개월과 육아휴직 기간에 복직 후 1개월이 추가되며, 지원금은 육아휴직 기간 내 50% 그리고 복직 후 50%로 육아휴직 기간 내 100% 지급한다.

업무를 나눈 동료 지원금 확대

육아휴직 및 육아기 업무 공백을 대신한 동료를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단축 노동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 보상을 지급한 사업주에게는 기존 20만 원이던 지원 금액을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60만 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40만 원으로 확대한다.

노동자의 유연근무 활용 장려

재택 및 원격근무, 시차 출퇴근 등 직원들의 다양한 유연근무 활용을 위한 장려금도 제공된다. 직원들이 시차출퇴근 및 재택, 원격근무를 한다면 20만 원, 선택근무 시에는 30만 원이 지급되며 육아기 노동자에게는 2배의 금액이 지원된다. 또한 기존 월 6일 이상이던 지원 요건도 올해부터 월 4일 이상 활용 시로 완화된다.

유연한 노동환경 시스템 지원

더 많은 기업이 부담 없이 유연근무를 도입할 수 있도록 출퇴근 관리 등 관련 시스템 설치 및 구독료를 지원한다. 먼저 관련 비용에 대한 사업주의 자부담 비는 20%로 축소하고,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엔 구독료에 한 해 자부담을 면제해 준다. 또한 유연근무, 노동시간 단축제도 외에 시간 단위 연차나 출산휴가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

참고 자료

고용노동부, 2026년 달라지는 일가정양립지원제도 카드뉴스